

## 17. 法人稅法中 改正法律(案)立法豫告

재정경제원공고 제1997-80호 1997. 8. 24

### 주요 골자

- 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및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인에 대하여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도입함.
- 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행 대비 5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하고, 1인당 접대비지출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치성 고급 유흥업소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
- 다. 기업이 공익성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자기자본의 2퍼센트와 소득금액의 7퍼센트를 합한 금액내에서 손비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기자본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금액 기준도 하향조정하여 소득금액의 5퍼센트내에서 손비로 인정하되, 손비인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3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라.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및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

마.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하여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자산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과세되도록 함.

### 개 정 이 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도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소비성 및 준조세성 경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소비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여 합병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 택 회 보